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325)

2025. 4. 2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현기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25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김현기 의원 (찬성 11인)

나. 제안일자 : 2025년 01월 07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2월 06일

2. 제안이유

-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돌봄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연령과 돌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정비함(안 전체)
- 나.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연령의 상한을 39세로 규정함(안 제2조)
- 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민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연령,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등을 확대해 보다 많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조례제정에 반영해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발의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준비, 혹은 막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학습, 일과 돌봄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 이들은 피곤함, 스트레스 등의 정서를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음. 이는 가족을 돌보는 활동, 돌봄 대상인 가족과 함께 있는 일상이 이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¹⁾
-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자원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 기준 해당 센터의 사업 예산은 약 4억3천만원임.
- 그러나 해당 센터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해 어린이재단, 기아대책본부 등 민간자원과 연계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 노혜진. (2024). 가족돌봄청년 일상의 재구성 과 정서적 경험. 보건사회연구, 44(2), 336-359.

-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일종의 사각지대였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2024),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가. 가족돌봄청(소)년 현황 및 관련 중앙정부 입법동향

-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장기, 신체·정신상의 질병이나 장애,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2021년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보도 이후 가족돌봄청년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 및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또한 부양·돌봄이 가족 테두리 내의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²⁾
- 이와 관련해 ‘25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해당 법률은 ‘가족돌봄아동·청년’과 ‘고립·은둔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조직 중심의 사례관리나 심리상담 및 학업·취업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시행예정에 있음.
-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2) 관계부처합동. (2022.2.14.)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제명의 개정 및 지원연령의 상한

- 현재 동 조례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민법」 제799조³⁾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청소년 기본법」(여성가족부 소관)및 「청년기본법」(국무조정실 소관)에서 규정한 청소년 및 청년 기준을 반영한 것임.

〈표〉 아동·청소년·청년의 법률상 연령 범위

구분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연령 범위	18세 미만	9세 이상 24세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 단, 현행 「청년기본법」 제3조⁴⁾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⁵⁾로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반영하고, 제명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또한, 현재 국회에 청년의 연령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김문수 의원 등 15인 발의, 의안번호 2207455)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u> 을 규정함으로써 <u>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을 말한다.	<u>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 족돌봄청소년·청년 ----- ----- 가족돌봄청소년 년·청년의 -----.</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 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 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 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⁶⁾와 청년의 기준을 통일시켜
지원 연령을 상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올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
한 법률」⁷⁾에서는 지원 대상을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로 규정

6)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7) 시행은 2026.3.26.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중인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만 13세~만 34세의 가족돌봄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향후 관련 시범사업 및 법령 제·개정 추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돌봄 대상(가족)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3호)

-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범위를 동거가족(사실혼의 배우자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하고 있음.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 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 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 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을 말한다.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장 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 또는 동거가족(사 실혼의 배우자 및 양친자 관계 를 포함)을 돌보고 있는 9세 이

현행	개정안
	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25년 2월 기준 가족돌봄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는 돌봄 가족의 범위를 본 조례와 같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가족돌봄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범위

지자체	조례명	가족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전라남도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경상남도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충청남도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지원 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경기도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돌봄대상을 가족 또는 동거가족(사실혼의 배우자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5.3.)된 바, 해당 법률에서도 그 돌봄대상의 범위를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음.

- 돌봄대상가족의 범위는 향후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될 예정이나, 보편적으로 친족은 「민법」 제767조의 정의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의미하고 있어 본 조례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사실혼의 배우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관련 보건복지부령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민법상 규정된 친족 및 가족의 범위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직무상 비밀 유지 규정 (안 제11조 신설)

-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일상에 개입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사업 등을 제공해야함. 이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정보 등이 수집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신설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 관련 업무에 종

현행	개정안
제11조 (생략)	<u>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단, 해당 개정안에서는 현행조례 제12조를 제11조로 잘못 표기하고 있어, 해당 표기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함.

다. 집행부서 의견 : 수정가결

-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시 청년기본조례를 반영한 연령 확대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향후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그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서 지원대상 연령을 상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3월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임.
- 위 법률 내용에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정의, 대상 및 지원 범위 뿐만 아니라 자기돌봄비의 지급 등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

이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들이 향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에서 그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